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48 호

2005년 8월 19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48호(차령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0호(신조(전자이미지공인)공인공고)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2호(수용재결신청물건공시송달공고(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공사))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3호(수용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인천논현2지구(27차)))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4호(이의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인천논현2지구(26차))) 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6호(보상계획열람공고(구월1동1210-19번지일원공영주차장외1개소)) 1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7호(2005년5회차암류차량공매공고)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8호(개별주택가격(안)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59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60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3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62호(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안)입법예고)) 40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35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학교))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4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548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 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5. 8. 3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5. 8. 16 ~ 2005. 8. 30(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달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80나3092	조근호	심곡동 178-7	인천지방법원 (98카단49720)	대열요업(주)	인천.남구 도화동 691-1
인천7나4210	김기동	용종동 213-3	인천지방법원 (2000카단9551)	(주)정우상호 신용금고	인천.중구 신포동 1
73로9008	권영준	동춘동 907	인천지방법원 (2002카단14221)	이기수 외1인	서울.구로.구로동 40-12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3977)

2005. 8.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552 호

수용재결신청물건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공사(주차장부지)”에 편입되는 지장물등의 수용재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물건내역을 소유자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공사>
3. 공고기간 : 2005. 8. 19 ~ 9. 1 (14일간)
4. 수용재결 신청 물건내역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453-2542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이철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4-7 (3/3)
 - 【소유자】 도숙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20 (12/6)
 - 【소유자】 송수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230 대양빌라 A/302
 - 【소유자】 이정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 (12/6)
7.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553 호

수용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인천논현2지구 <27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재결서정본을 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27차>)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재 결 일 : 2005. 7. 13
4. 공고기간 : 2005. 8. 18 ~ 2005. 9. 1
5. 교 부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453-2662)
6. 공시송달대상 : 붙임 “명단” 참조
7. 기 타

이의재결서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 시 송 달 내 역

☐ 사 업 명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27차)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대상자 명단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김 원 석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 21/3 풍림아파트 107-803	
2	소유자 미상		

보 상 금 내 역(지 장 물)

김원석 귀하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 21/3 풍림아파트 107/803
406 - 110

○별지 목록]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수용27차)

번 호	수용 물건의 표시			보상액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주소	관리의 종류	
3	고잔동	120-7	전데이너 (자재포함)3*12m	₩ 750,000	김원석			※
4			철재간판	₩ 500,000				※
		소계	2건	1,250,000				

소유자미상 귀하
주소불명
-

보 상 금 내 역(지 장 물)

○별지 목록]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수용27차)

번 호	수용 물건의 표시				보상액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성명/주소	관리의 종류	
6	논현동	산41-2	물탱크 보력	2.25㎡	₩ 200,000	소유자 미상			※
		소계	1건		2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554 호

이의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인천논현2지구 <26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재결서정본을 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26차>)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재 결 일 : 2005. 7. 13
4. 공고기간 : 2005. 8. 18 ~ 2005. 9. 1
5. 교 부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453-2662)
6. 공시송달대상 : 불임 “명단” 참조
7. 기 타

이의재결서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 시 송 달 내 역

☐ 사 업 명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26차)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대상자 명단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이 외 영	인천. 남동구 논현동 368-14 4/2	

보 상 금 내 역(지 장 물)

이외영 귀 하

인천 남동구 노현동 368-14(4/2)

405 - 848

●별지 목록] 택지개발사업(인천노현2지구, 이외26차)

번 호	이의신청 물건의 표시			보상액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성명 / 주소	관리의 종류	
1	노현동	368-14	관정	수량(면적) 1.00식	성명 / 등기부등본주소 이외영	1,050,000 식		
2			장독대	1.00식		190,000 식		
		소계	2건			1,24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556 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월1동1210-1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외 1개소”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8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구월1동1210-19번지 일원외1개소 공영주차장설치 공사
3. 사업의 개요
 -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210-19번지일원(452.0㎡)
 -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892 -16번지일원(422.5㎡)
4. 위 치 : 구월1동1210-19번지일원 공영주차장설치외 1개소
5. 보상시기 : 2005. 9월 예정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7. 보상대상
 - 0 토지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1210-19번지일원외 1개소
 - 0 지 장 물 : 상기 지번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에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
 - 0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0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불가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5. 8. 18 - 2005. 8. 31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교통과
12. 기타사항

토지 및 지장물조서등은 남동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 토지,지장물조서 : “첨부서류”(종이문서)

토 지 조 서

공 사 명 : 구월1동 1210-1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총 괄 표

동 명	구 분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구월동	대지	3	452.0	452.0	0	

소유자별

동 명	구 분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구월동	사유지	3	452.0	452.0	0	
	국유지	0	0	0	0	
합 계		3	452.0	452.0	0	

지 목 별

동 명	구 분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구월동	대 지	3	#REF!	#REF!	#REF!	
합 계		3	#REF!	#REF!	#REF!	

사용현황별

동 명	구 분	필지수	공부면적	사용면적	기타면적	비고
구월동	대 지	3	452.0	452.0	0	
합 계			452.0	452.0	0	

토 지 조 서

공시명 : 구월동 1210-19번지 일원 공공주차장 설치공사

필지 번호	소재지			면적 (㎡)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현일	일야	대지	도로	출장	전	전용지	구거	소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유형	
1	구월동	1210-19	대	160.9	160.9		160.9						160.9	한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 주공아파트 220-101	남동구청공조실용차	서울중구 흥정로가 75	근저당권	
2	구월동	1210-20	대	139.6	139.6		139.6						139.6	방홍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0-20번지				
3	구월동	1210-21	대	151.5	151.5		151.5						151.5	이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0-21번지				
합 계				452.0	452.0		452.0						452.0						

지 장 물 조 서

공사 명 : 구월1동 1210-19번지 일원 공원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종형	지번						성명	주 소	취득일자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	구월	1210-19		주택	RC(타일마감), 연약조,스래브	64.86	m ²	한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 주공아파트 220-101	1980.5.14	농림진흥 특별공영권	서울 용구 송정로가 75	근저당권		
				보일러실	물력,스래브	6.76	m ²								
				배관다	RC	3.51	m ²								
				보일러실	물력,스래브	5.76	m ²								
				창고	물력,스래브	5.76	m ²								
				화장실	PE(이동식)	1.00	m ²								
					담장(물력) : H-1.1, L-4.3										
					담장(물력) : H-1.2, L-10.9										
					담장(물력) : H-1.4, L-4.3										
					담장(물력) : H-1.5, L-2.7										
					담장(벽돌) : H-0.4, L-2.4, H-0.8, L-2.0										
					벽 축 : H-0.7~1.8, L-27.5, A-32.60m ²										
					철대 문 : 1조										
					경 화 조 : 1식										
					모 질 라 : 2대										
계				바닥마감 : 콘크리트포장 : A-12.0m ² , 보도블럭(벽각) : A-32.0m ²											
				밭 : A-21.8m ²											
						87.65	m ²								

지 장 물 조 서

공사 명 : 구월1동 1210-19번지 일원 공원주차장 설치공사

구분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종형	지번						성명	주 소	취득일자	성명	주 소	관리처장	
3	구월	1210-21		주택	연외조,스라브	87.35	m ²	이규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0-21번지	1978.12.1				
				창고	물막,스라브	7.60	m ²							
				계단	RC	1.40	m ²							
				창고	연외조,스라브	6.80	m ²							
				차양	스라브	6.46	m ²							
				확장식	물막,스라브	1.68	m ²							
					철대 양 : 1조									
					정 화 조 : 1식									
					모 일 라 : 1대									
					도시가 스 : 1식									
					바닥마감 : 콘크리트 : A-32.5m ²									
					발판 : A-18.5m ²									
					담장(전벽돌) : H-2.0, L-1.7									

토 지 조 서

공사명:만수5동 892-16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공유지분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도	잡	대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	만수	892-16	대	120.2	120.2				●	배석문	남구 용현동 92-35						
2	만수	892-17	대	144.4	144.4				●	최상규	남동구 만수동892-17						
3	만수	892-18	대	157.9	157.9				●	박영규	남동구 만수동892-18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만수5동 892-16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지 장 물 면 적			층 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잔여				성명	주 소	
1	만수5	892-16	대	63.43	63.43		1층	조 적	주 거	배석문	남구 용현동 92-35	
				5.23	5.23		1층	블 러	창고, 화장실			
				51.54	51.54			콘크리트	바닥			
				L=42 H=2	L=42 H=2			블 러	담장			
				1.8X2.1	1.8X2.1			철판	철대문			
				5년3(H) 2.4(W)				대추나무	조경수			
소 계				120.2	120.2							
2	만수5	892-17	대	72.32	72.32		1층	조 적	주 거	최상규	남동구 만수동892-17	
				8.53	8.53		1층	블 러	창 고			
				63.55	63.55			콘크리트	바닥			
				L=45 H=2	L=45 H=2			블 러	담장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만수5동 892-16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지 장 물 면 적			층 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잔여				성명	주 소	
				1.8X2.1	1.8X2.1			철판	철대문			
				4년2.7(H) 2.1(W)	4년2.7(H) 2.1(W)			대추나무	조경수			
				4년3.1(H) 2.7(W)	4년3.1(H) 2.7(W)			목련	조경수			
				5년3.4(H) 3.0(W)	5년3.4(H) 3.0(W)			목련	조경수			
	소 계			144.4	144.4							
3	만수5	892-18	대	72.20	72.20		1층	조적	주 거	박영규	남동구 만수동892-18	
				6.24	6.24		1층	블럭	창 고			
				79.46	79.46			콘크리트	바닥			
				L=46 H=2	L=46 H=2			블럭	담장			
				2.7X2.1	2.7X2.1				알미늄셔터			
				1.0X2.1	1.0X2.1			철판	철대문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만수5동 892-16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지장물면적			층별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잔여				성명	주소	
				5년3(H) 2.4(W)	5년3(H) 2.4(W)			대추나무	조경수			
				4년3.1(H) 2.7(W)	4년3.1(H) 2.7(W)			목련	조경수			
	소 계			157.9	157.9							
	합 계			422.5	4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5 - 557 호

2005-5회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 다 음 -----

가. 공매대상재산(차량)의 표시

연번	공매 차수	체 납 자		체 납 금 액	공 매 물 건	매 각 예정가격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4차	김 명 섭	650315-1042325	3,861,700	인천31러3250	500,000	등록원부 참조
2	4차	태영산업개발	120111-0086638	14,491,550	인천30모7373	870,000	등록원부 참조
3	2차	코로산업	120111-0119182	868,340	인천30러3269	270,000	등록원부 참조
4	1차	김 경 만	690610-1836029	669,170	인천31로9907	700,000	등록원부 참조
5	1차	제 일	120111-0067018	5,160,580	인천3도4808	500,000	등록원부 참조
6	1차	제 일	120111-0067018	5,160,580	인천31머3242	2,000,000	등록원부 참조
7	1차	제 일	120111-0067018	5,160,580	인천31러8764	1,500,000	등록원부 참조
8	1차	제 일	120111-0067018	5,160,580	인천31머3295	2,000,000	등록원부 참조
9	1차	제 일	120111-0067018	5,160,580	인천31고4718	2,500,000	등록원부 참조
10	1차	이 창 우	630228-1000526	2,263,690	인천3너8059	300,000	등록원부 참조
11	1차	상진산업	120114-0000153	22,376,080	인천30누8796	300,000	등록원부 참조
12	1차	손 성 호	631222-1636520	1,834,480	인천80더2204	2,500,000	등록원부 참조
13	1차	영훈주택건설	124611-0248234	1,488,540	인천80러4260	4,000,000	등록원부 참조
14	1차	홍 연 표	731207-2224119	406,610	인천32나3747	1,500,000	등록원부 참조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 2005. 8. 18. ~ 2005. 8. 31 . 24:00 (14일간)

※ 유의사항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공고(다음 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다. 입찰 참여마감일시 : 2005년 8월 31일 (수) 2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5년 9월 1일 (목) 14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발표

※ 입찰참여 마감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기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http://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입찰보증금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입금계좌번호 : 한미은행 465-00095-258, 남동구청(본인명의로만 입금)

※ 주의 : 입찰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신청후 [입찰참여] 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처저가격임

자. 기타사항

-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채납 지방세 및 채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중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체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낙찰받은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징수관리팀 차량공매담당 ☎032-453-229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558 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05. 1. 1 - 5. 31 발생한 주택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05.6.1기준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안)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05. 8. 12 - 8. 31(20일간)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과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05. 8. 12 - 8. 31(20일간)
- 제출사항 :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과표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직접 및 우편접수가능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5. 8. 1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55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정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행정서비스헌장을 단일화, 간소화하여 행정서비스 통합헌장, 공통이행기준,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헌장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본문”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32-453-218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부서별로 제정·운영되던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합하고 공통 이행기준 및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헌장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객만족도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헌장 제정 및 공통이행기준,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 마련(안 제4조)
- 헌장의 개선 사유 구체화(안 제5조)
- 헌장 제·개정시 고객의 의견과 소속 공무원의 의견반영(안 제8조)

☐ 본 문

“별첨참조”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참조”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1부.
- 인천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요령 1부.[시 자치행정과-6288(2005. 5. 27)]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 ③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 ④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태도,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 이행정도 및 민원인 편의 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4조(현장의 제정)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본청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현장은 전문으로 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세부 이행사항은 공통이행기준과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의 개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현장의 개선)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1. 현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현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비능률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이외에도 고객의 요구사항 및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정기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의 제·개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 ① 현장 제·개정시 작성단계에서 제6조 제7호에 의한 고객 및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은 제1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헌장의 이행)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제정 기관의 장은 제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 따라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의 모든 공무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과 공통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은 이를 제정한 부서의 소속공무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1항의 “제15조의”를 “제16조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행정서비스헌장” (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단체 등을 말한다. ③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④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태도,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 이행정도 및 민원인 편의 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 -----구본청의----- 고객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은 전문으로 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세부 이행사항은 공통이행기준과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현장의 개선)①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u>	<u>제5조(현장의 개선)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개선하여야 한다.</u> <u>1.현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u> <u>2.현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비능률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u> <u>3.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u> <u>4.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u> <u>5.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u> <u>② 제1항 이외에도 고객의 요구사항 및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정기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u>제8조<신설></u>	<u>제8조(현장의 제·개정 절차) ①현장 제·개정 시 작성단계에서 제6조 제7호에 의한 고객 및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u> <u>②제1항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은 제1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제8조 내지 제9조(생략)</u>	<u>제9조 내지 제10조 (현행과 같음)</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0조(현장의 이행) ①</u>현장제정 <u>부서의 장은</u>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u>②</u>현장제정 <u>부서의 장은</u>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u>③</u>남동구의 모든 공무원은 <u>소관분야의 현장을</u>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u>제11조(현장의 이행) ①</u>----- <u>기관의 장은</u> 제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 따라 현장을 개선하며,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u>②</u>남동구의 모든 공무원은 <u>행정서비스현장 전문</u>과 공통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은 이를 제정한 부서의 소속공무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u>제11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u>현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u>제15조의</u> 위원회에서 분석·평가한다.	<u>제12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u>----- ----- <u>제16조의</u>-----.
<u>제12조 내지 제19조</u>(생략)	<u>제13조 내지 제20조</u>(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5 - 56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29일자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 관련[별표1]의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규정
 - 일반건축물(교회, 사무실 등) : 총95%, 최고 600만원까지
⇒ 1년 의무개방(단, 방범시설추가지원받은 경우 2년 의무개방)
 - 학교(모든학교) : 총 95%, 최고1천만원까지, 2년의무개방
 - 기본방침 : 인근주민과 약정을 체결하여 개방하려는 개인, 단체, 기관등으로 일반건축물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09.0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453-2853, fax453-273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그사유)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0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9일자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 관련 [별표1]의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규정

- 일반건축물(교회, 사무실 등) : 총 95%, 최고 600만원까지
⇒ 1년 의무개방(단,방범시설추가지원받은 경우 2년 의무개방)
- 학교 (모든 학교) : 총 95%, 최고 1천만원까지, 2년의무개방
- 기본방침 : 인근주민과 약정을 체결하여 개방하려는 개인, 단체, 기관 등으로, 일반건축물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 참고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추진계획” 1부
(교통관리과 -2138, 05. 03. 20)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1]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금의지급기준(제4조관련) < 현행 >

설 치 유 형	보조금 지원액 (차량1대 설치기준)
○ 담장철거 직각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 담장철거 평행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000원까지 지원
○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2,300,000원까지 지원
○ 이웃간경계 철거 후 주차장 설치(2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000원까지 지원
<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및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지원	

[별표1]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관련) < 개정안 >

1)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급

구 분		지 원 금 액 (원)
담장철거	평 행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직 각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000원까지 지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이웃간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2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000원까지 지원
<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및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지원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분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무개방 기간
일반건축물 (교회,사무실 등)	- 주차노면표시 정비(구획선, 안내 노면표시)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200만원 까지	1년
	- 방범시설추가지원(CCTV 및 출입구 차단시설) - 기타 방범 시설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400만원 까지	2년
학 교 (초·중·고·대학교 포함한 모든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1,000만원까지	2년
기본방침	- 자기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과 약정을 체결하여 개방하려는 자로서 모든 개인, 단체, 기관 등 - 지원대상조건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제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562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부업대학생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 나. 부업대학생 선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선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 가. 토요일 근무시간 삭제 (안 제3조)
- 나. 부업대학생 선발방법 변경(안 제6조)
 - 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우선 선발
 - 선발 확정 후 재학증명서 제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53-2185)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부업대학생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 부업대학생 선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선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토요일 근무시간 삭제 (안 제3조)
- 부업대학생 선발방법 변경(안 제6조)
 - 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우선 선발
 - 선발 확정 후 재학증명서 제출

☐ 본 문 : “별지”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지”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단,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을 선발한다

제6조 제3항 중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하여 추첨일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선발이 확정된 자는 재학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u>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u> 제3조(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각 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u>단,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한다.</u>) 제6조(선발) ①제2조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남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부업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에게 <u>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u>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u>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u> 추첨토록 한다. 【신설】	<u>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조례</u> 제3조(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각 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u>삭제</u>) 제6조(선발) ① ----- ----- ----- -----<u>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u> -----. ②<u>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을 선발한다.</u> ③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하여 추첨일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u> 추첨토록 한다 ④<u>선발이 확정된 자는 재학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5 - 35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건설과(☎032-453-2572) 및 교통과(☎032-453-28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8.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학교)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5	10	집산 도로	367	도림동 562-6 (광3-6호선)	남촌동 185-2 (대1-13호선)	일 반 도 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신설	소로	3	10	3	특수 도로	170	중1-168호선	중2-197호선	자전거 전용도로			서창구획정리사업 지구내(제11호경 관녹지중복결정)

○ 주 차 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주차장	만수5동 892-16번지 일원	-	422.5	422.5		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설	④	주차장	구월1동 1210-19번지 일원	-	452.0	452.0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공공시설

○ 학 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 교	초등학교 ⇒ 중학교	서창동 197-2	10,671.9	-	10,671.9	1998-06-08 (인고113)	택지개발 6,700.0㎡ 구획정리 3,971.9㎡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표 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 교	초등학교 ⇒ 중학교 (시설의세분 변경)	서창동지역 중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